

<제18차>

이사회 회의록

< 2011. 12. 22(목) >

한국장학재단

제18차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- ① 회의일시 : 2011년 12월 22일(목) 10:30 ~ 12:30
- ② 회의장소 : 한국장학재단 24층 대회의실
- ③ 출석이사 : 재적인원 12명 중 7명 참석
(이사장1, 상임이사2, 당연직1, 비상임 이사3)
 - 이 사 장 이경숙
 - 이사 김은섭, 권광호, 송기동, 김명환, 김지한, 천세영
 - ※ 감사 금만수 참석
- ④ 불참이사 : 5명
 - 이 사 방문규, 정은보, 이길순, 이봉화, 정선양
- ⑤ 상정안건
 - 의결안건(6건)
 - 제18-1호 한국장학재단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 - 제18-2호 2011년도 제6차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
 - 제18-3호 2012년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및 장기차입금 상환 계획(안)
 - 제18-4호 인사규정 개정(안)
 - 제18-5호 취업규칙 개정(안)
 - 제18-6호 임원 보수지급(안)
- ⑥ 소관부서 : 경영기획실, 인력개발부, 재무관리부

2. 논의 결과(요지)

□ 개회선언 · 성원보고

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제18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.

간사(최성준 경영기획실장)로부터 성원보고(총 7명 참석)를 받음.

□ 전차회의결과 보고

간사로부터 전차회의결과를 보고 받은 후,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결과를 원안 접수함.

□ 의결안건 제18-1호 : 한국장학재단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
(보고자: 경영기획실장 최성준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개요

-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에 의거 상정
-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
- 한국장학재단 중기경영목표('12~'14)에 따른 세부계획임

· 주요내용

-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
- 2012년도 전략목표 별 사업계획
 - ※ 국가장학금(유형I,II) 지원 사업 신설
- 2012년도 예산 (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국회 의결에 따라 변동 가능)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많은 재정을 투자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람
- 홍보 및 서비스 접점의 계획을 잘 세워 실행해 주시기 바람
- 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·분석 등 수행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람.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18-2호 : 2011년도 제6차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

(보고자: 경영기획실장 최성준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(예산총칙) 기부금 장학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기부금항목의 사업변경을 위한 추가경정을 예외 승인사항으로 인정
 - 기부금 항목의 변경은 이사장 승인으로 추가경정 하되, 다음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
- (일반회계) '09년도 시작된 유예사업(군복무자이자납부유예,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)에서 상환(수입)액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 예산 신설 및 지출예산 변경
- (기부금 특별회계) 기업에서 제공한 기부금(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, 7천만원)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지출항목을 신설
- (삼성기부금 특별회계) 주식 배당금 수입 및 관리 비용 발생으로 관련 수입·지출의 예산을 편성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18-3호 : 2012년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및 장기차입금 상환 계획(안)

(보고자: 재무관리부장 정영성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2012년도 학자금대출 신규공급 재원 및 2012년 만기도래 채권 상환을 위한 재원 3.4조원을 조달
- 채권발행을 위주로 하되 대출금리 인하 및 단기 유동성관리를 위해 CP발행 등을 활용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18-4호 : 인사규정 개정(안)

(보고자: 인력개발부장 조정현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'10년도 기관장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청원휴가(연2일이내)¹, 명령휴가(연6일이내)² 및 안식휴가(매5년마다 연6일)³ 폐지
-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. 현재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,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의결 논의함.
 - 1」 본인 및 가족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
 - 2」 사고발생가능성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
 - 3」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근속직원으로 만40세 이상인 경우
- 공공기관 열린 고용 구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인사규정상 채용 우대 가능자에 장애인 등 추가
 - 기존의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외에 비수도권 지역인재, 이공계 전공자, 고졸자 및 일정기간 중소기업 경력자 추가
- 징계양정의 감경·면제기준 적용시 기관장 표창을 추가하고 가중·감경 기준을 파면·해임으로 세분화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조건부 의결(노조와의 합의 필요)

□ 의결안건 제18-5호 : 취업규칙 개정(안)

(보고자: 인력개발부장 조정현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가족친화인증심사(주관:여성가족부)시 권고사항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보육 여성직원에게 유급수유 시간 보장을 반영
-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보육 여성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보장함(안 제24조)
 - * 관계법령 : 근로기준법 제75조(육아시간)
 - *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18-6호 : 임원 보수지급(안)

(보고자: 인력개발부장 조정현)

① 특이사항

-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33조 2항¹⁾에 의거 재단 임원(이사장, 상임감사, 상임이사 2명 총 4명) 퇴실

1)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.

- 선임비상임이사(김지한 이사)가 회의 진행

② 안건 주요내용

- 금융형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임원의 보수를 3년간에 걸쳐 상향조정하고, 경영평가 성과급 상한을 전년도 기본연봉의 60%에서 100%로 상향
- '12년도 기관장 및 감사 기본연봉은 향후 정부의 인상률 지침 통보 시 임원보수에 반영하여 지급

③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④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- 폐회선언. 끝.